

2016학년도

## 학 칙(개정 안)

연성중학교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연성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연성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예절(禮節) 바르고 건강(健康)하고 창의(創意)적인 연성인”을 교육목표로 한다.

###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연성중학교(蓮城中學校)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하상로 14-7에 둔다.

###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 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9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6월 5일
  3. 봄 단기 방학
  4. 여름방학
  5. 가을 단기 방학
  6. 겨울방학
  7. 학년말 방학
  8.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② 제①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등)**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 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 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 **제5장 교육과정 · 수업일수 · 고사 · 과정수료 · 졸업**

**제11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경기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하(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하고, 연간 출석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현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으로 '기타결석'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연성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성인으로 하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으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학원수강,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 훈련,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학생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6장 입학 · 재취학 · 전 · 편입학 · 유예 및 면제

#### 제16조(입학자격)

-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제17조(입학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

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방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9조(재취학)** 본교를 유예·면제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정원 외로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취학 학년도 학교 수업일수의 2/3 미만이 될 경우, 당해 학년도 재취학·전입·진급·졸업을 할 수 없다.

#### **제20조(전·편입학)**

- ① 본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및 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입학(전학, 편입학 포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학구내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21조 (유예 및 면제)**

- ① 유예 또는 면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제22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①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 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조기입학

###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조기입학)

-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으로 인정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기진급 ·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제26조(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

조기진급 · 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 조기졸업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8장 기타비용의 징수 등

### 제27조(기타 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 제28조(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 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9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0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31조(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특별교육 이수
  6.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7. 학급교체
  8. 강제전학
-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종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①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①항 6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장재하지 않는다.(단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 제32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지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성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3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학부모회의 설치)

-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연성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장 보칙

### 제35조(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 ② 제①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채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본 학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200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학칙은 2004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학칙개정은 200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학칙개정은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학칙개정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학칙개정은 2011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학칙개정은 2012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학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학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학칙은 201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학칙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학칙은 2016년 4월 일 개정하여, 2014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제 호

# 졸업장

성명 ( 년 월 일생 )

위 사람은 3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중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

(제2호 서식)

제 호

# 졸업장

성명

( 년 월 일생 )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중학교장 성명

학 교 장  
직 인